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0가단13804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김정원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구

변 론 종 결 2021. 10. 1.

판 결 선 고 2021. 11. 19.

주 문

1. D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9. 10. 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9,166,666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166,66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피보전채권

1) 주식회사 E 관련

가) 주식회사 E은 2018. 9. 19. D에게 금 500만 원을 만기 2021. 9. 19., 대출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각 연 24%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원고는 위 대부회사로부터 2019. 7. 26.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며, 그 무렵 그 채권양도의 통지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D을 상대로 위 양수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이 법원 2019차전123930)하여 이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이 2020. 1. 17. 확정되었는데, 위 지급명령에 따르면 D은 원고에게 7,209,313원 및 그 중 금 500만 원에 대하여 2020.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주식회사 F 관련

가) 주식회사 F는 2018. 2. 27. 위 D에게 2,000만 원을 만기 2023. 2. 27., 약정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각 연 24%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다. 원고는 위 대부회사로부터 2019. 3. 28.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그 채권양도의 통지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D을 상대로 위 양수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이 법원 2020차전9375)하여 이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이 2020. 7. 16. 확정되었는데, 위 지급명령에 따르면 D은 원고에게 28,362,547원 및 그 중 19,842,694원에 대하여 2020.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D의 처분행위

- 1) D의 어머니인 G은 2019. 6. 4.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인으로는 D 외에도 다른 자녀들인 ‘피고 B’, ‘H’이 있었다(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은 각 1/3씩이다).
- 2)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은 2019. 10. 4.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B이 단독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10.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후 2019. 11. 12. D의 아들인 피고 C 명의로 2019. 10.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순차로 마쳐졌다.

다. D의 재산상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앞서 본 대출금 채무를 비롯하여 약 4,011만 원의 부채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1원장에 대한 신용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별다른 재산은 없이 부채만 부담하고 있던 D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 즉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와 같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 및 전득자에 해당하는 피고들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B이 자신의 자금으로 실질적으로 매수하여 그 소유명의만을 망인 앞으로 하여 둔 명의신탁재산인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명의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피고 B 앞으로 회복한 것에 불과하고 순수한 의미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때의 명의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매도인이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3. 10. 7.자 2013스133 결정의 취지 참조). 또한 이러한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주장을 살펴보면,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09. 12. 30. 전소유자인 J로부터 매수하여 2010. 2.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J가 위 매매 당시 계약명의자인 망인이 아닌 피고 B를 매수 당사자로 삼을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인과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명의신탁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명의신탁관계를 매도인이 인식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매도인의 인식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 또한 제출되지 않았는바,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관계를 전제로 하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어 망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D에게 법정상속지분(1/3)의 비율로 일단 상속되었다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피고 B의 단독소유로 귀속된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관련 법리

사해행위 후 변제 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경우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가 취득한 이익에 대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역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등).

또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K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인 2010. 2. 3.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억 1,100만 원인 K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인 2019. 11. 12.자 해지를 원인으로 같은 날 그 말소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또한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8,040만 원인 L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③ 피고 C 측에서 위 근저당권말소를 위하여 피담보채무액 전액을 변제하였는데 사해행위 당시 그 피담보채무액은 8,250만 원이었던 사실, ④ 2019. 11. 1.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는 1억 4,000만 원이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됨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리 및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가액을 산정하여 보면 19,166,666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140,000,000원 - 위 말소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82,500,000원) × 채무자 D의 상속분 1/3, 원 미만 버림]이 되고, 이는 앞서 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2020. 7. 22. 현재 원리금 합계 잔액이 35,571,860원(7,209,313원 + 28,362,547원)에 달한다}보다 적으므로, 결국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19,166,666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및 가액배상에 이르게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D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19. 10. 4.자 상속재산분할협이는 19,166,66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수익자와 전득자가 공동피고가 되어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원고에게 19,1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순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 빌라3차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층 4층 공동주택

지하1층 및 1층 내지 4층 각 131.8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대 122.5㎡

2.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대 76.1㎡

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대 213.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4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60.46㎡

(대지권의 표시)

1, 2, 3 소유권대지권 410분의 41 끝.

